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2

제출년월일 : 1993. 7.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사유

내무부로 부터 시.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것임.

□ 주요골자

- "마을회" 위탁관리 범위에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추가 (제5조 제1항)
-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와 관련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상충된 조문일치(제22조)
- 공유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층별 세분및 현행보다 하향조정 등(제25조 제2호)
- 공유재산 대부료 납부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하여 30일 연장(제26조)
-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의 수의계약 매각가능 면적범위를 시지역은 300㎡이내(군지역400㎡)에서 1,000㎡(군지역 2,000㎡)이하까지로 확대하고, 사유건물점유 공유토지에 대하여 사유건물 소유자에게 건물바닥면적 2배이내 까지 분할매각이 가능토록 조정 등(제39조의 2)

□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
- 시.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내무부 재정 13330 -462호. '93. 7. 22)

□ 예산상황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자료

- 별 첨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으로 한다.

제22조제4호중 "영 제95조제1항"을 "영 제95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2호 나. 목 다음에 "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중 나. 목 내지 마. 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바목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제26조제1항 제2호의 "30일 이내"를 각각 "60일내"로 한다.

제39조의 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1981. 4. 30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 (안)
<p>1. (생략)</p> <p>2. (생략)</p> <p>가. (생략)</p> <p>나.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3. 3층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가. (생략)</p> <p>나. <u>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u></p> <p>다. <u>3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u></p> <p>라. <u>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u></p> <p>마. <u>지하실(2층이하 건물의 지하실포함)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u></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현행과 같음)</p> <p>다. <u>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u></p> <p>3. 3층이상의 건물을 ----- ----- -----</p> <p>한다.</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u></p> <p>다. <u>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u></p> <p>라. <u>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u></p> <p>마. <u>지하실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u></p> <p>바. <u>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u></p> <p>사. <u>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u></p>
<p>제26조(대부료의 납기) ①도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년도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제26조(대부료의 납기) ① ----- ----- -----</p> <p>1.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안)
<p>2. 경작이외의 목적으로 대부분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계약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u>30일</u>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u>30일</u> 이내</p>	<p>2. ----- ----- ----- <u>60일</u>이내, ----- ----- 해당하는 날 ----- ----- ----- 부터 <u>60일</u> 이내</p>
<p>제39조의 2(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영 제95조 제2항 제4호에 의한(중략)</p>	<p>제39조의 2(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영 제95조 제2항 제4호에 의한(중략)</p>
<p>1. - 2. (생략)</p>	<p>1. - 2.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3. <u>일단의 토지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1981. 4. 30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분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u></p>

[기타 참고자료]

법 경 발 책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95조(잡종재산의 매각) ①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매각할수 있다. <신설90. 11. 6>

1.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때
2. 제2항의 각호의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때
3. 기타 규모, 형상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때

② 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으로 매각할수 있다. <개정 90. 8. 8. 90. 11. 6>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때
2.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할때
3. 삭제 <90. 11. 6>
4. 제8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그대부를 받은자에게 매각할때
5. 예정가격이 1건당 200만원이하의 재산을 매각할때
6.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할때
7.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때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때
9.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매각할때
10. 관광진흥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소정 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할때

11. 새마을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시설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 주민에게 매각할때
12.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에 의하여 재산의 매각을 비밀히 할 필요가 있을때
13. 천재, 지변 기타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할때
14. 인구분산정책에 따른 정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때
15. 주식의 매각을 증권업자에게 위탁할때
16.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할 경우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고자 할때
17.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 육영단체에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때
18. 지방공기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산을 매각할때
19.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수있는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할때
20. 도시계획사업으로 그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때
21. 삭제 <90. 11. 6>
2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하는 농공단지등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시행하는자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할때
23. 재공고 입찰에 불인 경우에는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때
24.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때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 】

제32조(농어촌정주생활권의 개발) 정부는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산기반및 편의, 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고 농어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정주생활권(이하 "정주생활권"이라 한다)을 개발하여야 한다.